

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		전화번호
	주소		
신청기관	명칭		전화번호
	소재지		
	대표자성명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
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.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장비보유명세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